

서울고등법원 2023. 5. 18 선고 2023나201154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강성래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인
변 론 종 결 2023. 4. 27.
판 결 선 고 2023. 5. 18.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1가합2627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0. 5. 4.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1,943,8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7면 제4행의 “원고가”를 “피고가”로, 제1심 판결 이유 제9면 제7행의 “E”을 “D”로 각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채권이 소멸하여 취소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채권은 이미 제3채무자인 D의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사해행위 제도의 본질상 소멸한 채권의 취소를 명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채권의 채무자인 D이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그러한 이유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면서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악의의 수익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명하는 것이다. 이는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서 실시한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등의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명하다.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위 주장은 독자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의 책임범위를 벗어난 판단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궁극적으로 원피고가 동일한 일반채권자로서 안분배당받을 것임에도 이 사건 채권 전부의 가액배상을 명한 제1심 판결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이므로, 수익자인 채권자로 하여금 안분액의 반환을 거절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할 때에 수익자 자신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 중의 1인이라는 이유로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대한 안분액의 분배를 청구하거나,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배당요구권으로써 원상회복청구와의 상계를 주장하여 그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위 대법원 2003다50061 판결 등 참조).

3)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와 마찬가지로 C의 일반채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사해행위로 판단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원상회복을 명함에 있어 가액배상을 명하는 범위를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위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또한, 이 사건 소송 외에 F 주식회사로부터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를 구한다는 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하였으므로,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2) 여러 개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각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합한 금액이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공제한 잔액, 즉 소위 ‘공동담보가액’을 초과한다면 수익자가 채권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가액은 공동담보가액인데 그럼에도 수익자는 공동담보가액을 초과하여 반환하게 되는 범위 내에서 이중으로 가액을 반환하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수익자가 어느 채권자에게 자신이 배상할 가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 때에는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가장

다액으로 산정된 공동담보가액에서 자신이 반환한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청구이의의 방법으로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8다202774 판결 참조).

3)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 외의 다른 채권자로부터 이 사건 채권의 양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한 이 사건의 판단이 달라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피고는 추후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자신이 지급해야 하는 부분을 넘어서서 가액배상하지 않을 수 있다).

3.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2023. 5. 11. 제1심 판결에서 가액배상을 명한 돈을 공탁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나.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주요한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로 한정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5796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형성의 소로서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77785, 277792 판결 등 참조).

다. 앞서의 법리 및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사해행위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이라는 점, 이 사건 소송 외에도 원피고를 포함한 C에 대한 여러 채권자들 사이에서 여러 건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변론을 재개하여 심리를 속행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가 이 법원 변론종결일 이후 원고 등을 피공탁자로 하여 제1심 판결이 가액배상을 명한 돈을 공탁하는(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년 금제472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의 경위, 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항소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지용, 판사 백숙중, 판사 유동균

별지

채권의 표시

1. 채권양도·양수 계약의 당사자

가. 양도인 : 주식회사

나. 양수인 : 주식회사

다. 채무자 :

주식회사

2. 채권양도·양수 계약일자

2020. 5. 4.

3. 양도하는 채권의 내용

양도인 주식회사 가 채무자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

대금 청구채권 금 331,943,860원. 끝.

